

세무서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

귀하의 년도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신 청 인	성 명		생 년 월 일	
	주 소			
1. 결정 내용 (원)				
구 분		결 정 금 액	비 고	
계				
2. 결정 근거				
3.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				
◦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.				
◦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				
※ 안내사항				
1. 결정금액은 산정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11 등)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.				
① (100분의 50 감액) 신청가구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				
② (100분의 10 감액) 기한 후 신청한 경우				
③ (소득세 공제세액) 소득세 신고시 부녀자추가공제(근로장려금) 및 자녀세액공제(자녀장려금)를 받아 장려금과 중복으로 받는 경우				
2.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총당(30% 한도)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총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.				
3.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				
4. 소득·재산 등이 추가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에 가산세(1일 1만분의 3에 해당합니다)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.				
세무서장			직인	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

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

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